##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(곽상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048

발의연월일: 2020. 12. 30.

발 의 자: 곽상도·조경태·배준영

김승수 · 정희용 · 한기호

윤재옥・金炳旭・이종배

서일준 • 권영세 • 김희곤

의원(12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 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, 임용권자는 공개전형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.

그런데 일부 학교에서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도모하고 우수한 인재를 교원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사립학교 간 공동으로 공개전형을 실시하고자 하나 공동 실시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상황임.

이에 교원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방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사립학교 임용권자가 공동으로 공개전형을 실시할수 있도록 공개전형의 방법을 추가함으로써 각 학교의 실정에 맞는 교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다양화하려는 것임(안 제53조의2제11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3조의2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제10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임용권자가 단독 또는 다른 임용권자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시·도의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교원의 신규채용에 관한 적용례) 제53조의2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第53條의2(학교의 장이 아닌 교	第53條의2(학교의 장이 아닌 교
원의 임용) ① ~ ⑩ (생 략)	원의 임용) ① ~ ⑩ (현행과
	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① 제10항에 따른 공개전형은
	임용권자가 단독 또는 다른 임
	용권자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
	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시・도
	의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
	<u>할 수 있다.</u>